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년 사람의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제1조(정원) ① 사람의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야간보호 : 57명
- 위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함.

제2조(이용대상) 사람의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주·야간보호 :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제3조(이용신청) ①사람의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신청을 하기 전에, 이용자의 기본적인 정보 및 요청사항 파악을 위해 사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일정 협의 후 입소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국, 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검진 포함하며, 본 서류는 입소 시 제출함)
3. 기관에서 약 복용 할 경우, 처방전 제출

제4조(모집방법) 사람의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기관 정보 및 관련 시설물 사진 게시
2. SNS 홍보(네이 블로그)
3. 오프라인 홍보
 - 주야간보호센터 홍보물(물티슈, 카달로그, 종이백 등)을 나누어 주면서 홍보함
 - 건물 내 현수막 또는 허가받은 일부 장소에 현수막 설치, 협력병원 및 협력기관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

제5조(급여계약 등) 사람의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센터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대한 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와 시설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② 5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그리하지 아니한다.
- ③ 3항에 대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계약에 반영한다.
 -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호기간
 - 2) 장기요양 급여비율
 - 3) 비급여비용 등
- ④ 6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율이 변경되어 시설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팩스등 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의 목적
- 본 시설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관계법령에 의거한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한도액

2026. 1.1 기준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일반 15%	감경 9%	면제 6%	
1등급	2,512,900	376,935	226,161	150,774	면제
2등급	2,331,200	349,680	209,808	139,872	
3등급	1,528,200	229,230	137,538	91,692	
4등급	1,409,700	211,455	126,873	84,582	
5등급	1,208,900	181,335	108,801	72,534	
인지지원등급	676,320	101,448	60,868	40,579	

-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재가급여를 이용 할 수 있는 월한도 금액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 재가급여는 일반 대상자의 경우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받거나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40% 건강대상자는 이용한 급여비용의 9%를, 60% 건강대상자는 이용한 급여비용 6%를 본인이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 『공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② 주-야간보호 이용자간별 급여비용(원)

2026. 1.1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03시간 이상 ~ 0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06시간 이상 ~ 0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0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 : 1회 4,400원, 간식비 : 1,300원)

③ 그 밖의 비용부담

-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5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사랑의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사랑의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4.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구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5.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 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6.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7. 그 밖에 사랑의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 이행의무

제8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5조 1항에 따른 급여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2)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 3)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 4) 이용자가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문의 연락처

- 기관 전화 : 032-505-0034
- FAX : 070-8611-0083